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995
----------	-------

발의연월일 : 2025. 9. 16.

발 의 자 : 김재섭 · 서천호 · 엄태영
박수영 · 김장겸 · 김기웅
박수민 · 최수진 · 강승규
유용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청탁·압력·금품수수 등 일반적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퇴직자나 장기근속자의 친족을 우선 채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나 친족 채용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퇴직희망자의 자녀를 우선·특별 채용하도록 요구하면서 ‘고용세습’ 논란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이러한 행태는 공정한 경쟁으로 일자리를 얻으려는 청년 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기업 채용 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음.

이에 4촌 이내 친족 채용 시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친족 채용 강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3호·제4호 및 제4조의4 신설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20년 이상의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이하 “친족”이라 한다)을 우선채용 또는 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4. 임원·대주주 또는 이에 준하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친족임을 이유로 채용 전형의 절차·기준을 왜곡하거나 다른 구직자의 채용 기회를 제한 및 차별하는 행위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친족채용의 공개) 구인자는 채용한 구직자가 임직원의 친족인지의 여부를 파악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분기별로 취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제4조의2를”을 “제4조의2제1호 및 제2호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조의2제3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하여 채용 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

1. 제4조의4에 따른 친족채용의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
자

부 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되는 채용절차부터 적용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누 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 다. 1. · 2. (생 략) <u><신 설></u>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 ----- -----.
<u><신 설></u>	1. · 2. (현행과 같음) 3. <u>20년 이상의 장기근속자 · 정 년퇴직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이 하 “친족”이라 한다)을 우선 채용 또는 특별채용하도록 요 구하는 행위</u>
<u><신 설></u>	4. <u>임원 · 대주주 또는 이에 준 하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 는 자의 친족임을 이유로 채 용 전형의 절차 · 기준을 왜곡 하거나 다른 구직자의 채용 기회를 제한 및 차별하는 행 위</u>
<u><신 설></u>	<u>제4조의4(친족채용의 공개) 구인 자는 채용한 구직자가 임직원 의 친족인지의 여부를 파악하 여야 하고 그 현황을 분기별로</u>

제17조(과태료) ① 제4조의2를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략)

<신 설>

3.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취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과태료) ① 제4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② _____

1. · 2. (현행과 같음)

3. 제4조의2제3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하여 채용 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③ _____

1. 제4조의4에 따른 친족채용의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u>1.</u> ~ <u>3.</u> (생략) ④ (생략)	<u>2.</u> ~ <u>4.</u>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